#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941 발의연월일: 2024. 11. 27.

발 의 자:김성원・이인선・김선교

박충권 • 박성훈 • 고동진

김정재 · 김소희 · 송석준

서일준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분권의 흐름에 따라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은 강화되었으나 그에 걸맞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방의정연수가 필요함.

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 조직편성권에 가로막혀 경기도 의회 직속기관으로 의정연수원을 설립하기 어려운 상황임.

이에 따라 지방의정연수원을 지방의회 직속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, 강의·연구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 인 교육 훈련을 통해 의회기능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104조의2 및 제104조의3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장제12절에 제104조의2 및 제10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04조의2(지방의정연수원의 설치) ① 지방의회의원과 제102조제3항의 사무직원 교육 및 연수 등을 위하여 시·도의회에 지방의정연수원을 둔다.
  - ② 지방의정연수원에 원장 1명을 두며, 지방의정연수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04조의3(교수요원) ① 지방의정연수원에는 강의·연구 및 교육 운영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둘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연구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교육과정의 개발·운영, 교재편찬 및 지정과제의 연구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한다.
  - ③ 교수요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104조의2(지방의정연수원의 설
	치) ① 지방의회의원과 제102
	조제3항의 사무직원 교육 및
	연수 등을 위하여 시・도의회
	에 지방의정연수원을 둔다.
	② 지방의정연수원에 원장 1명
	을 두며, 지방의정연수원의 조
	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
	령령으로 정한다.
<u>&lt;신 설&gt;</u>	제104조의3(교수요원) ① 지방의
	<u>정연수원에는 강의·연구 및</u>
	교육 운영을 담당하는 교수요
	원을 둘 수 있다.
	② 제1항에 따라 연구를 담당
	하는 교수요원은 교육과정의
	개발·운영, 교재편찬 및 지정
	과제의 연구 등 특수한 업무를
	수행한다.
	③ 교수요원의 자격 등에 관하
	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
	<u>로 정한다.</u>